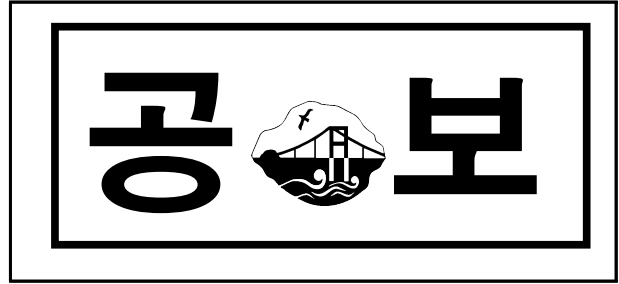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78호 2024. 7. 23.(화)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4-75호 남해군관리계획(서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정정고시 1

남해군 고시 제2024-76호 미조면(사항)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 8

남해군 고시 제2024-81호 남해군관리계획(에코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
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0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4-1074호 적조대비 해상가두리시설 대피장 지정사항 공고 16

남해군 공고 제2024-1075호 적조방제용 형망선 임차계약 신청안내 공고 18

남해군 공고 제2024-1082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지1024호 두곡지구 위험지역
개선공사) 20

남해군 공고 제2024-1096호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21

남해군 공고 제2024-1107호 금전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29

남해군 공고 제2024-1111호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35

남해군 공고 제2024-1112호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 남해교육지원청) 결정(변경)
공람·공고 42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4-96호 남해군 보물섬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44

회 램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조정실(860-3044, 행정 3044)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4 - 75호

남해군관리계획(서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정정고시

남해군관리계획(서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남해군 고시 제2017-6호(2017.01.25.)로 군관리계획(재정비, 용도지역) 결정(변경)한 사항에 일부 오기사항[이전고시 반영(남해군고시 제2010-69호, 2010.11.23.)]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4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관리계획(서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참조
- 관계도면 : 실음생략

남해군관리계획(서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	지구의 세 분	위치	제한 내용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6	남해서상지구 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남해군 서면 서상리 1182-9 번지 일원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개발	45,478	-	45,478	경고 제1998-49 (1998.03.14.)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	구역의 세 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6	남해서상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휴양형	남해군 서면 서상리 1182-9 번지 일원		45,478	-	45,478	경고 제1998-49 (1998.03.14.)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계	45,478	100.0	
관광·휴양시설용지	11,758	25.3	
공 공 시 설	15,240	33.8	
녹 지	18,480	40.9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가구 및 획지번호	면적 (㎡)	구성비 (%)	비고
계			45,478	100.0	
관 광 · 휴 양	관광·휴양(변경)				
	기정	변경	I	11,758	25.9
	가족호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I-1	7,500	16.5
	향토역사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I-2	2,260	5.0
	어촌종합휴양시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I-3	1,998	4.4
	공공시설(변경없음)		II	15,240	33.5
	주차장		II-1	1,385	3.0
			II-2	1,405	3.1
	광장		II-3	268	0.6
			II-4	685	1.5
			II-5	4,907	10.8
	야외공연장		II-6	5,000	11.0
	관광안내소 및 매점		II-7	230	0.5
	보건지소		II-8	1,360	3.0
녹지(변경없음)		III	18,480	40.6	
조성		III-1	18,480	40.6	

■ 변경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I-1	○ 지정용도 변경 - 가족호텔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 남해군 고시 제2010-69호 (2010.11.23.)에 따른 고시내용 반영
변경	I-2	○ 지정용도 변경 - 향토역사관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 남해군 고시 제2010-69호 (2010.11.23.)에 따른 고시내용 반영
변경	I-3	○ 지정용도 변경 - 어촌종합휴양시설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 남해군 고시 제2010-69호 (2010.11.23.)에 따른 고시내용 반영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① 관광·휴양용지

가구 번호	가구면적 (㎡)	도면 번호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I	11,758	I-1	서면 서상리 1182-9잡	7,500	
		I-2	서면 서상리 1316-5잡	2,260	
		I-3	서면 서상리 1316-9잡	1,998	

② 공공시설용지

가구 번호	가구면적 (㎡)	도면 번호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II	15,240	II-1	서면 서상리 1182-10잡	1,385	
		II-2	서면 서상리 1182-10잡	1,405	
		II-3	서면 서상리 1182-10잡	268	
		II-4	서면 서상리 1182-10잡	685	
		II-5	서면 서상리 1182-10잡	4,907	
		II-6	서면 서상리 1182-10잡	5,000	
		II-7	서면 서상리 1316-4제	230	
		II-8	서면 서상리 1316-12잡	1,360	

③ 녹지용지

가구 번호	가구면적 (㎡)	도면 번호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Ⅲ	18,480	Ⅲ-1	서면 서상리 1182-10잡	18,480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높이·배치·형태·색채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관광·휴양용지 : **변경**

도면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I-1	관광 휴양 용지	기정	지정용도 : 가족호텔
		변경	지정용도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건 폐 율	· 40%이하
		용 적 륜	· 100%이하
		높 이	· 최고높이 : 9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I-2	관광 휴양 용지	기정	지정용도 : 향토역사관
		변경	지정용도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건 폐 율	· 40%이하
		용 적 륜	· 100%이하
		높 이	· 최고높이 : 2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I-3	관광 휴양 용지	기정	지정용도 : 어촌종합휴양시설
		변경	지정용도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건 폐 율	· 40%이하
		용 적 륜	· 100%이하
		높 이	· 최고높이 : 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2) 공공시설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II-1	공공 시설 용지	지정용도	· 지정용도 : 주차장
		건 폐 율	-
		용 적 륜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II-2	공공 시설 용지	지정용도	· 지정용도 : 주차장
		건 폐 율	-
		용 적 륜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II-3	공공 시설 용지	지정용도	· 지정용도 : 광장
		건 폐 율	-
		용 적 륜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II-4	공공 시설 용지	지정용도	· 지정용도 : 광장
		건 폐 율	-
		용 적 륜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II-5	공공 시설 용지	지정용도	· 지정용도 : 광장
		건 폐 율	-
		용 적 륜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도면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II-6	공공 시설 용지	지정용도	· 지정용도 : 야외공연장
		건 폐 율	-
		용 적 륜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II-7	공공 시설 용지	지정용도	· 지정용도 : 관광안내소 및 매점
		건 폐 율	· 40%이하
		용 적 륜	· 100%이하
		높 이	· 최고높이 : 1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II-8	공공 시설 용지	지정용도	· 지정용도 : 보건지소
		건 폐 율	· 40%이하
		용 적 륜	· 100%이하
		높 이	· 최고높이 : 2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3) 녹지용지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III-1	녹지 용지	지정용도	· 지정용도 : 녹지
		건 폐 율	-
		용 적 륜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남해군 고시 제2024 - 76호

미조면(사항)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시행계획(변경) 고시

미조면(사항)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계획 변경을 고시합니다.

2024. 7. 5.

남 해 군 수

1. 사업의 명칭 : 미조면(사항)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2. 사업 목적 : 어촌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어촌만의 특색을 부각시킬 수 있는 테마 설정 및 관광지 조성으로 어촌지역 활력 제고 및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함
3. 위 치 :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일원(사항마을)
4. 사업 기간 : 2020년 ~ 2024년(5년간)
5. 총 사업비 : 9,997백만원(국비6,998, 지방비2,999) *자부담 112별도
6. 사업 시행자 : 남해군수(위·수탁 : 한국농어촌공사)
7. 사업 개요
 - 기초생활기반
 - 사항문화단지 조성(연면적 941㎡)
 - 복지시설개선(사항마을회관 개보수)
 - 지역경관개선
 - 사항 이야기길 조성(해안도로 파도막이 정비 L=735m, 미조남향 사면녹화)
 - 사항 전망공원(갈매기 놀이터, 고양이 쉼터 조성)
 - 사항 오색골목조성(안길 정비 A=6,245㎡)
 - 지붕경관 정비(지붕정비 페인트도색 108가구)
 - 지역역량강화
 - 교육, 홍보, 지역활성화, 경영지원 등
8. 시행계획 열람 장소 : 관련자료는 남해군청 경제과(지역개발팀, 055-860-3613)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기능별 사업 내역

사 업 내 용		사업비(백만원)			비고
		시행계획 (당초)	시행계획 (변경)	증감	
총계		9,997 <39>	9,997 <112>	- 증 <73>	
기초생활 기반확충	소 계	6,461	5,802	감 659	
	사항문화단지	6,042	5,383	감 659	
	복지시설개선	419	419	-	
지역경관개선	소 계	1,635 <39>	2,294 <112>	증 659 <증 73>	
	사항 이야기길 조성	701	701	-	
	사항 전망공원 조성	290	290	-	
	사항 오색골목 조성	293	293	-	
	지붕경관 정비	351 <39>	1,010 <112>	증 659 <증 73>	
지역역량강화	소 계	830	830	-	
	교육	409	409	-	
	홍보/마케팅	96	96	-	
	컨설팅	108	108	-	
	정보화	217	217	-	
부대비용	소 계	1,071	1,071	-	
	기본계획비, 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등	1,071	1,071	-	

남해군 고시 제2024 - 81호

남해군관리계획(에코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남해군 고시 제2020-152호(2020.9.08.)로 고시된 남해군관리계획(에코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 7. 18.

남 해 군 수

1.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164-3번지 일원
2. 면적 : A = 68,265㎡
3.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 붙임참조
4. 관계도면 : 실음생략(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

[붙임]

남해군관리계획(에코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9	에코촌 지구단위 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이동면 무림리 1164-3번지 일원	67,860	증)405	68,265	남해군 고시 제2020-152호 (2020.09.08)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9	에코촌 지구단위 계획 구역	○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 A = 67,860㎡ ⇒ 68,265㎡ (증 405㎡)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 정정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및 세부시설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67,860	증) 405	68,265	100.0	
관광휴양시설용지	40,325	증) 310	40,635	59.5	
에코센터 및 체험관	4,709	증) 41	4,750	6.9	
에코빌리지	8,379	증) 512	8,891	13.0	
힐링캠핑장	8,981	증) 86	9,067	13.3	
테마광장	18,256	감) 329	17,927	26.3	
공공시설용지	27,535	증) 95	27,630	40.5	
도로	2,875	증) 95	2,970	4.4	
녹지용지	24,660	-	24,660	36.1	
완충녹지	7,492	-	7,492	11.0	
경관녹지	17,168	-	17,168	25.1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1) 도로 결정조서

■ 도로 총괄표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2	577	2,875	-	-	-	1	447	1,213	1	130	1,662
	변경	2	584	2,970	-	-	-	1	454	1,308	1	130	1,662
중로	기정	1	130	1,662	-	-	-	-	-	-	1	130	1,662
소로	기정	1	447	1,213	-	-	-	1	447	1,213	-	-	-
	변경	1	454	1,308	-	-	-	1	454	1,308	-	-	-

■ 도로 결정(변경) 세부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130	소로2-106 (이동면 무림리 1164-125)	에코빌리지 경계 (이동면 무림리 1164-9)	일반 도로		남해군고시 제2020-152호 (2020.09.08)	
기정	소로	2	106	8~14	집산 도로	8,864 (447)	이동면 석평리 841-7	삼동면 지족리 291-19	일반 도로		남해군고시 제2017-6호 (2017.1.25.)	
변경	소로	2	106	8~14	집산 도로	8,864 (454)	이동면 석평리 841-7	삼동면 지족리 291-19	일반 도로			구역내 일부구간 연장

주) () 안의 연장은 에코촌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내용	변 경 사 유
소로2-106호선	소로2-106호선	○ 구역내 일부구간 노선 연장 - 폭원 = 8~14m - 연장 = 447m → 454 (지구단위구역내 연장임)	○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노폭 변경

2) 공간시설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녹지	완충 녹지	이동면 무림리 1164-19 일원	7,492	-	7,492	남해군고시 제2020-152호 (2020.09.08)	
기정	2	녹지	경관 녹지	이동면 무림리 1164-23 일원	17,168	-	17,168	남해군고시 제2020-152호 (2020.09.08)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관광·휴양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I-1	I	4,750	이동면 무림리 1164-4번지 일원	4,709	4,750	에코센터 및 체험관
II-1	II	35,885	이동면 무림리 1164-8번지 일원	8,981	9,067	힐링캠핑장
II-2			이동면 무림리 1164-22번지 일원	18,256	17,927	테마광장
II-3			이동면 무림리 1164-16번지 일원	8,379	8,891	에코빌리지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관광·휴양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I-1	이동면 무림리 1164-4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2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축선		-
II-1	이동면 무림리 1164-8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1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축선		-
II-2	이동면 무림리 1164-22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중화장실, 관리사무소, 급수 및 배수 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체력단련장, 놀이형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7호 관광 휴게시설 중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 이하
		높이		1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축선		-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II-3	이동면 무림리 1164-16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2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남해안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건축선		-

2) 공공시설용지 : 건축물의 건축 불가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4 - 1074호

적조대비 해상가두리시설 대피해역 지정 공고

유해성 적조발생에 대비한 사전준비태세 확립과 적조피해 발생전 해상가두리시설 안전지대 이동을 통한 어업피해 최소화 도모를 위하여 적조대비 해상가두리시설 대피장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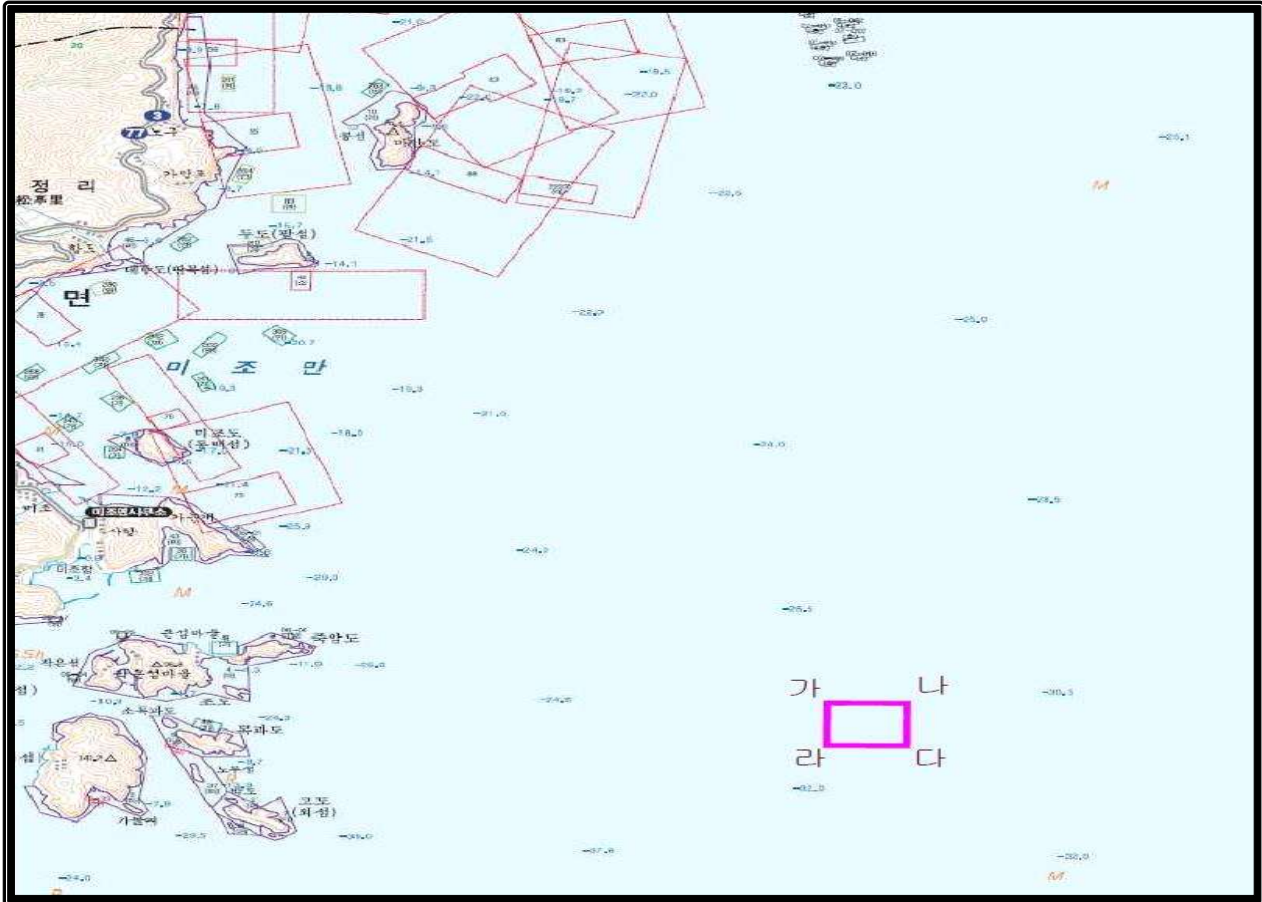
남 해 군 수

<적조대비 해상가두리시설 대피장 지정현황>

지정목적	면적 (ha)	지정기간	위치	좌표(WGS) 및 구역 (위도,경도)	지정받은자
적조발생 시 해상가두리시설 대피장	30	2024.07.05 ~ 2024.10.31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미조도 부근	가.34-41-37.150, 128-06-28.923 나.34-41-37.150 128-06-52.494 다.34-41-20.925 128-06-52.494 라.34-41-20.925 128-06-28.923 【가,나,다,라,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구역】	남해군수 (수산자원과장)

붙임 : 대피장 지정 해역도 1부. 끝.

(해상가두리 적조대피장 해역도)



상기 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수역

구분	경위도(WGS)		기점간 거리(m)		비 고
	위도(N)	경도(E)	기점(구간)	거리(m)	
가	34-41-37.150	128-06-28.923	가-나	600	
나	34-41-37.150	128-06-52.494	나-다	500	
다	34-41-20.925	128-06-52.494	다-라	600	
라	34-41-20.925	128-06-28.923	라-가	500	

남해군 공고 제2024 - 1075호

적조방제용 형망선 임차계약 신청안내 공고문

■ 임차개요

- 임차물량: 35척 내외
- 임차기한: 2024년 7월 ~ 적조 소멸 시(국립수산과학원 적조 주의보 해제 시)
- 근무시간: 1일 8시간
- 작업일대: 7톤이상(720,000원), 7톤미만(650,000원)
- 작업내용: 적조방제용 황토살포 및 물갈이작업 등 적조 방제활동
- ※ 임차물량은 신청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황토살포 작업이 없는 날은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음

■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2024. 7. 5. ~ 7. 15.(11일간)
- 신청장소: 수산자원과 어업지원팀 (☎ 055-860-3353)

■ 자격조건

- 7톤 이상 선박으로 양식어장 및 관리선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선박
 - 단, 7톤이하의 선박이라도 적조방제 실적이 있거나, 방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선박은 금액을 조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선박의 승선인원은 2명(선장, 보조인력)으로 한다.
- 2인치 이상의 양수기를 설치한 선박
- 무전기 및 GPS 등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
- 선체의 파손이 없고, 상태가 양호한 선박

■ 신청서류

- 선박서류 일체(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관리선지정증)
- 계약서 1부(어업지원팀 비치)
- 본인 선박이 아닌 경우 임차계약서 및 선박사용 동의서 1부.
- 기타 무전기 및 GPS 등 항해장비 설치확인 서류

■ 척수의 규모

- 적조방제 선박의 척수는 35척 내외로 한다.
 - 다만,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자격을 검토하여 추가 선정·심의 할 수 있다.

■ 선박의 채점기준

구 분 \ 점 수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톤 수	5톤이하	5~6톤	6~7톤	7~8톤	8~9톤	9톤이상
선 령	15년이상	10~15년	7~10년	5~7년	3~5년	3년이하
마 력	150마력 이하	150~200	200~250	250~300	300~350	400마력 이상

※ 단, 동일 점수시에는 톤수가 큰 선박, 선령이 적은선박 순서로 우선하여 선정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4 - 108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1024호선 두곡지구 위험지역 개선공사」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4. 4. 11.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7. 8.

남 해 군 수

- 1. 사 업 명 : 지방도1024호선 두곡지구 위험지역 개선공사
- 2. 사업의 위치 : 남해군 남면 당항리 산308-14번지 일원
- 3.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지사
- 4. 공고사유 :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
- 5. 공고 기간 : 2024. 7. 8. ~ 2024. 7. 23.(15일)
- 6.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명	송달주소(최종 확인지) 또는 토지소재지	비 고
1	김0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 360, 4층 402호	
2	김0미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07번길 48(의정부동), 1층 델리아	
3	김0심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07번길 48(의정부동), 1층 델리아	

7. 기 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 남해군 건설교통과(☎ 055-860-3314)

남해군 공고 제2024 - 1096호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9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2.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상 조문을 상위법과 통일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남해군 건축 조례」 조항 변경사항 반영(안제20조)

- 1) 근거 : 「남해군 건축 조례」 제41조
- 2) 내용 : 2017.9.28.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대지의 분할제한에 대한 조항이 제40조에서 제41조로 변경됨
- 3) 조례 개정안

(기존) 분할제한 면적은 「남해군 건축 조례」 제40조에서

(개정) 분할제한 면적은 「남해군 건축 조례」 제41조에서

나. 상위법에 사용되는 문구로 조문 수정(안제40조)

- 1) 근거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3호

2) 내용 :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서 지역관련 조문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사용되는 문구로 조문 수정

3) 조례 개정안

(기존) 제1종일반용주거지역

(개정) 제1종일반주거지역

다. 「문화유산법」의 법률 위임사항 반영(안제41조의6, 안제48조의4)

1) 근거 : 「문화유산법」 제57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근현대문화유산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2) 내용 : 「근현대문화유산법」이 제정됨에 따라 「문화유산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필요사항 규정<시행일:2024.9.15.>

3) 조례 개정안

(기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개정)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라. 생산관리지역에서 허용행위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18 나목)

1) 근거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8호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1조의9

2) 내용

가).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까지 건축 가능하도록 개정

나). 생산관리지역에서 조례로 위임된 허용행위에 대해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9] 제2호 나목의 규정으로 반영하고자 함

3)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국토교통부령 별표1의2)

4) 조례 개정안

(기존)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및 사목

(개정)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4년 7월 30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414, 팩스 055-860-373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도시건축과과 도시개발팀(전화 055-860-34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남해군 건축 조례」 제40조” 를 “「남해군 건축 조례」 제41조” 로 한다.

제40조제3호 중 “제1종일반용주거지역:” 을 “제1종일반주거지역:” 으로 한다.

제41조의6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으로 한다.

제48조의4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으로 한다.

별표 18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토지분할 제한면적) ①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 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 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 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남해군 건축 조례」 제40조에서 정한 면적 이상 으로 한다.</p> <p>② (생 략)</p>	<p>제20조(토지분할 제한면적) ① ----- ----- ----- ----- ----- 「남해군 건축 조례」 제41조-----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 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 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 략)</p> <p>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p> <p>4. ~ 21. (생 략)</p>	<p>제4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제1종일반주거지역: -----</p> <p>4. ~ 21. (현행과 같음)</p>
<p>제41조의6(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 특 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 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 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건폐율은 제40 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p>	<p>제41조의6(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 특 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 ----- -----.</p>
<p>제48조의4(국가등록문화유산의 용적률 특 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p>	<p>제48조의4(국가등록문화유산의 용적률 특 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p>

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적률은 4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18조제1항-----

 -.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8호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
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것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 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
이 건축하는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에 한정하
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남해군 공고 제2024 - 1107호

보상계획 열람 공고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금전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 계획을 공고하오니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을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7. 12.

남 해 군 수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 기간(예정) : 2024. 7. 로부터 2024. 9. 까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금전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029-1번지 일원	하천정비 (전석쌓기 A=870.0m)	남해군수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2. 보상 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역

가.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일체

나.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 참조 또는 개별 통지문 발송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4. 7. 12. ~ 2024. 7. 27. (15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재난안전과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055-860-3493)

다. 열람 사항

- 토지 및 물건 등의 편입내용(수량, 면적 등 상이 여부) 확인
- 토지 등의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

라. 이의신청 방법

- 보상사무소 또는 남해군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4. 보상 시기

가. 열람기간 만료 → 감정평가업자선정(주민추천 등) → 감정평가 후 개별 통지 예정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 산정

-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함.

나. 보상금 지급 방법

- 손실보상협의 계약 체결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입금(현금보상의 원칙)

다. 감정평가업자의 추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대상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함.

※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인 선정

◀감정평가법인 추천서▶

토지소재지	당초지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자 확인	전화번호 (주택 또는 휴대폰)	비고
			주소	성명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인장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보상금 지급절차

- 보상계획 공고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협의 및 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 및 공탁

6. 기타사항

가. 상기의 보상계획은 추후 사업계획의 변경,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편입토지 및 물건의 내역에 대하여는 본 공고와 별도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 개별 통지할 예정이나 송달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공고로서 송달에 갈음합니다.
- 다. 보상대상내역은 추후 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또는 명칭	(인)	접수방법 : 방문
	주 소		접 수 자 : (인)
	연 락 처		
사업명칭	금전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이의신청대상 소재지 및 종류			
이의신청 사유 및 내용			

『금전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상기 토지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남해군수 귀하

[붙임 : 토지조서]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래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관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산246-2	임	997	997	합술*	경상남도 하동군 김포면***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수	채권자	가압류	
								합술*		남해군 상주면 ***	채권자	가압류	
2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산247-2	임	9967	227	조광*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광*	주소	주수	채권자	가압류	
						장효*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장효*		서울 중구***	채권자	가압류	
						장재*	부산광역시 사하구 비동동***	장재*					지분 1767/ 3967
3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851-1	밭	1969	19	박철*	충청남도 남구 인성동***	박철*					지분 1539/ 3967
4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산248-2	임	595	104			박근*	주소	주수	토지대장상 소유자	미등기	지분 661/ 3967
								박철*		부산광역시 남구 신천동***	채신세 납부자	미등기	

남해군 공고 제2024 - 1111호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1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2. 개정이유

- 가.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높임으로써 외부 자금 유출을 막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민의 소득 증대 기대
- 나. 공사의 분할 발주를 검토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지역건설업체가 더 많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 주요내용

- 가. 지역건설사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제3조의2)
- 나. 분할발주 명시(제3조의3)

4. 의견제출

- 가. 의견제출 기간 : 2024년 7월 12일 ~ 7월 31일까지(20일간)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443, 팩스 055-860-3708,

E-mail : jkpark81@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055-860-34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남해군 관할구역 내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산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남해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산업을 하는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와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3조의2(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과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7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와 직접시공 비율의 확대

제3조의3(분할발주 등) 공사 시행부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사의 분리 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분리 발주 할 수 있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남해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홍보) 군수는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건설공사 등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 관계법령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가 해당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지역 내 우수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우수 자재 및 지역 건설기계장비의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필요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제 9조에 따른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이나 하도급 비율이 우수한 건설산업체
3. 제4조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가장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 지역 건설산업체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많은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건설 산업체

제9조(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남해군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 경영상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체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율 제고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7. 제8조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에 관한 사항
8. 지역건설산업체와 유관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건설산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지역건설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 회계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 가. 남해군의회에서 추천한 남해군의회 의원
 - 나. 건설산업 관련 단체나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건설산업과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나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건설산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4-1112호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 남해교육지원청) 결정(변경) 공람·공고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 남해교육지원청)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우리군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2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 남해교육지원청) 결정(변경)(안) 조서 : <붙임> 참조
- 공람기간 : 신문 게재 다음날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남해군 도시건축과
-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공람장소에서 열람 후 서면으로 제출
- 관계도서 :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 남해교육지원청)
결정(변경) 조서

□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A	공공청사	남해교육지원청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362-10번지 일원	-	증) 5,733	5,733	-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공공청사	○ 신설 - A = 5,733m ²	○ 1981년 건립된 현청사의 노후화와 학생·노약자·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한 보행환경, 교직원 교육장 부족 등 교육공동체 불편을 해소하여 원활한 교육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공공청사)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4 - 96호

남해군 보물섬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보물섬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7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보물섬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한 남해군 보물섬농업대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나. 보물섬농업대학의 설치, 조직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 다. 교육과정, 교육생 선발, 포상 및 징계, 출석 인정범위, 수료 및 수료생 우대 등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8조)
- 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마. 학사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의견제출

- 가. 의견제출기간 : 2024년 8월 6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30,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남해군청 농축산과 인력육성팀
- 2) 연락처 : 전화 055-860-3926, 팩스 055-860-3981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농축산과 인력육성팀(전화 055-860-39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보물섬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물섬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농업인에 대한 학습지원 및 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남해군 보물섬농업대학(이하 “대학”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대학은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학장 등)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처장을 각 1명씩 둔다

② 학장은 군수로 하고, 부학장은 남해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교무처장은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③ 학장은 대학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학장 및 교무처장은 학장을 보좌하며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관리한다.

제4조(교육과정 운영) ① 교육과정별 교육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교육시간은 100시간으로 한다.

② 교육은 이론교육과 현장교육을 병행한다

③ 대학의 교육과정은 농업인 수요조사 및 지역농업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④ 교육과정별 교육비는 무료로 하되 교재비, 실습비 등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교육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5조(교육생의 선발) 교육생 선발은 남해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사람 중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6조(포상 및 징계 등) ① 학장은 교육생 중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② 학장은 교육생 중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 또는 퇴학 등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출석 인정범위) 학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교육생은 결석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및 배우자 출산
2. 본인 및 직계 존속·비속 경조사
3. 사전 계획된 농촌진흥·기관 기술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4. 「병역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소집·검열·훈련 등에 참가하는 경우

제8조(수료 및 수료생 우대) ① 교육생은 교육시간의 10분의 7 이상을 출석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

② 수료생에게는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업 관련 사업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대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학사규정) 학장은 효율적인 대학 운영을 위하여 학사규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